

평창군이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인구과밀로 인한 이반장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군 및 읍면에서의 행정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함과 아울러 면 행정의 주민지원 폭을 넓히고 현장중심 행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리 분리
- 나. 향후,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 과도한 리 분리 및 신설을 억제하여 행정능률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리분리 기준을 조례에 명시
- 다.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개정(2009.4.1)에 따라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의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2. 주요내용

- 가. 리 조정 내역 : 진부면 2개리 분리 및 신설 (“별표” 참조)

읍·면	현행	변경(안)	조정사유	증감
진부면	하진부1리	하진부1리 하진부10리	하진부1리 진부주공아파트 인구과다	증 1 (분할)
	하진부6리	하진부6리 하진부11리	하진부6리 진부시대아파트 인구과다	증 1 (분할)

- 나. 행정리 분리기준 명시 : 개정조례안 제2조 참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발취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2012.04.13~05.03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이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 설치기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리의 세대 수가 12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 분리 전 행정리의 인구가 7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리의 인구가 28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 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3Km이상 떨어져 있을 때 행정리를 분리 할 수 있다.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지 1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읍면명	리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역
합계		190		
평창읍 41	상리	1		종전 상리 일부
	중리	2	중 1리	종전 중리 일부
			중 2리	종전 중리 일부
	하리	6	하 1리	종전 하리 일부
			하 2리	종전 하리 일부
			하 3리	종전 하리 일부
			하 4리	종전 하1리 일부지역
			하 5리	종전 하1리 일부지역
			하 6리	종전 하3리 일부지역
	천변리	1		종전 천변리 일원
	중부리	3	중부1리	종전 중부리 일원
			중부2리	종전 중부리 일원
			중부3리	종전 중부리 일원
	노론리	1		종전 노론리 일원
	이곡리	1		종전 이곡리 일원
	조동리	1		종전 조동리 일원
	고길리	1		종전 고길리 일원
	지동리	1		종전 지동리 일원
	유동리	1		종전 유동리 일원
	약수리	1		종전 약수리 일원
	조둔리	1		종전 조둔리 일원
	천동리	1		종전 천동리 일원
	도돈리	1		종전 도돈리 일원
	마지리	2	마지1리	종전 마지1리 일원
			마지2리	종전 마지2리 일원
	응암리	1		종전 응암리 일원
	대상리	1		종전 대상리 일원
	대하리	1		종전 대하리 일원
	입탄리	1		종전 입탄리 일원
	향동리	1		종전 향동리 일원
	여만리	1		종전 여만리 일원
	후평리	1		종전 후평리 일원
주진리	2	주진1리	종전 주진1리 일부	
		주진2리	종전 주진2리 일부	
용향리	1		종전 용향리 일부	
임하리	1		종전 임하리 일부	

읍면명	리 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 역
	계 장 리 다 수 리 하 일 리 원 당 리 뇌 운 리	1 1 1 1 1		중전 계장리 일부 중전 다수리 일부 중전 하일리 일부 중전 원당리 일부 중전 뇌운리 일부
미탄면 13	창 리 울 치 리 회 동 리 평 안 리 백 운 리 한 탄 리 기 화 리 마 하 리 수 청 리	3 1 2 2 1 1 1 1 1	창 1 리 창 2 리 창 3 리 회동1리 회동2리 평안1리 평안2리 백운리 한탄리 기화리 마하리 수청리	중전 창1리 일부 중전 창2리 일부 중전 창3리 일부 중전 울치리 일원 중전 회동1리 일부 중전 회동2리 일부 중전 평안1리 일부 중전 평안2리 일부 중전 백운리 일원 중전 한탄리 일원 중전 기화리 일원 중전 마하리 일원 중전 수청리 일원
방림면 14	방 림 리 운 교 리 계 촌 리	5 3 6	방림1리 방림2리 방림3리 방림4리 방림5리 운교1리 운교2리 운교3리 계촌1리 계촌2리 계촌3리 계촌4리 계촌5리 계촌6리	중전 방림1리 일원 중전 방림2리 일원 중전 방림3리 일원 중전 방림4리 일원 중전 방림5리 일원 중전 운교1리 일원 중전 운교2리 일원 중전 운교3리 일원 중전 계촌1리 일원 중전 계촌2리 일원 중전 계촌3리 일원 중전 계촌4리 일원 중전 계촌5리 일원 중전 계촌6리 일원
대화면 28	대 화 리	11	대화1리 대화2리 대화3리 대화4리 대화5리 대화6리 대화7리	중전 대화1리 일원 중전 대화2리 일원 중전 대화3리 일원 중전 대화4리 일원 중전 대화5리 일원 중전 대화6리 일원 중전 대화7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 역
	신 리	5	대화8리	중전 대화8리 일원
			대화9리	중전 대화9리 일원
			대화10리	중전 대화2리 일부
			대화11리	중전 대화7리 일부
			신 1 리	중전 신 1 리 일부
	개 수 리	2	신 2 리	중전 신 2 리 일원
			신 3 리	중전 신 4 리 일원
	상안미리	4	신 4 리	중전 신 6 리 일원
			신 5 리	중전 신 7 리 일원
			개수1리	중전 개수1리 일원
			개수2리	중전 신 2 리 일원
	하안미리	6	상안미1리	중전 상안미1리 일부
			상안미2리	중전 상안미2리 일부
			상안미3리	중전 상안미3리 일부
			상안미4리	중전 상안미4리 일부
			하안미1리	중전 하안미1리 일부
			하안미2리	중전 하안미2리 일부
			하안미3리	중전 하안미3리 일원
			하안미4리	중전 하안미4리 일원
			하안미5리	중전 하안미5리 일원
하안미6리			중전 하안미1리 일부	
동평면 19	창 동 리	4	창동 1 리	중전 창동1리 일부
			창동 2 리	중전 창동2리 일부
			창동 3 리	중전 창동1리 일부
			창동 4 리	중전 창동4리 일부
	평 촌 리	2	평촌 1 리	중전 평촌리 일부
			평촌 2 리	중전 평촌리 일부
	유 포 리	3	유포 1 리	중전 유포1리 일부
			유포 2 리	중전 유포2리 일부
			유포 3 리	중전 유포1리 일원
	진 조 리	1		중전 진조리 일원
	면 온 리	2	면온 1 리	중전 면온1리 일원
			면온 2 리	중전 면온2리 일원
	무 이 리	2	무이 1 리	중전 무이리 일부
			무이 2 리	중전 무이리 일부
	흥 정 리	1		중전 흥정리 일원
	원 길 리	2	원길 1 리	중전 원길1리 일원
			원길 2 리	중전 원길2리 일원
	덕 거 리	2	덕거 1 리	중전 덕거1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 역
			덕거 2 리	종전 덕거2리 일원
용평면 15	용 전 리	1		종전 용전리 일원
	이목정리	2	이목정 1리	종전 이목정1리 일원
			이목정 2리	종전 이목정2리 일원
	속 사 리	2	속 사 1 리	종전 속사1리 일원
			속 사 2 리	종전 속사2리 일원
	노 동 리	1		종전 노동리 일원
	도 사 리	1		종전 도사리 일원
	백옥포리	3	백옥포 1리	종전 백옥포리 일부
			백옥포 2리	종전 백옥포리 일부
			백옥포 3리	종전 백옥포1리 일원
	장 평 리	2	장 평 1 리	종전 진부면 장평1리 일원
			장 평 2 리	종전 진부면 장평2리 일원
	재 산 리	3	재 산 1 리	종전 대화면 신3리 일원
			재 산 2 리	종전 대화면 신5리 일원
			재 산 3 리	종전 대화면 신8리 일원
진부면 38	하진부리	11	하진부 1리	종전 하진부1리 일부
			하진부 2리	종전 하진부2리 일원
			하진부 3리	종전 하진부3리 일원
			하진부 4리	종전 하진부4리 일원
			하진부 5리	종전 하진부1리 일부
			하진부 6리	종전 하진부4리 일부
			하진부 7리	종전 하진부4리 일부
			하진부 8리	종전 하진부리 일부
			하진부 9리	종전 하진부6리 일부
			하진부10리	종전 하진부 1리 중 하진부리 115번지
			하진부11리	종전 하진부 6리 중 하진부리166-3,166-4,166-5,166-6번지
	상진부리	3	상진부 1리	종전 상진부1리 일부
			상진부 2리	종전 상진부 리 일부
			상진부 3리	종전 상진부3리 일원
	호 명 리	1		종전 호명리 일원
	송 정 리	5	송 정 1 리	종전 도암면 호명2리 일원
			송 정 2 리	종전 도암면 호명3리 일원
			송 정 3 리	송정리중 대2537
			송 정 4 리	송정리중 대2506의1~11 대2507의1~10 대2508의1~6 대2509의1~12 대2510의1~12 대2511의1~6 대2512의1~12 대2513의1~6 대2514~8 공원2515 대2516의1~2 잡2516의3 대2516의4 대2517의1~2 대2518의1~2 대2519의1~2 대2520의1~15 대2521~8 대2522의1~10 대2523의1~12 대2524의1~18 대2525의1~10 대2526의1~6 대2527의1~12 대2528의1~6 대2529의1~12 대2530의1~7 공원2531 대2532의1~8 대2533의1~4 대2534의 1~8 잡2535의1 대2535의2~3 잡2536의1 대2536의2~3 도로2640번지

읍면명	리 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 역
			송 정 5 리	중전 송정3리 중 대2538, 대2539
	두 일 리	2	두 일 1 리	중전 두일리 일원
			두 일 2 리	중전 두일리 일원
	척 천 리	1		중전 척천리 일원
	탑 동 리	1		중전 탑동리 일원
	동 산 리	1		중전 동산1, 2리 일원
	간 평 리	2	간 평 1 리	중전 간평1리 일원
			간 평 2 리	중전 간평2리 일원
	상월오개리	2	상월오개1리	중전 상월오개리 일부
			상월오개2리	중전 상월오개리 일부
	거 문 리	1		중전 거문리 일원
	신 기 리	1		중전 신기리 일원
	봉 산 리	1		중전 동산면 도암리 일원
	마 평 리	2	마 평 1 리	중전 마평1리 일원
			마 평 2 리	중전 마평2리 일원
	수 향 리	1		중전 수향리 일원
	화 의 리	1		중전 화의리 일원
	막 동 리	1		중전 막동리 일원
	장 전 리	1		중전 장전리 일원
대관령면 22	횡 계 리	13	횡 계 1 리	중정 횡계1리 일부
			횡 계 2 리	중전 횡계2리 일부
			횡 계 3 리	중전 횡계3리 일부
			횡 계 4 리	중전 횡계4리 일부
			횡 계 5 리	중전 횡계5리 일부
			횡 계 6 리	중전 횡계1리 일부
			횡 계 7 리	중전 횡계6리 일부
			횡 계 8 리	중전 횡계6리 일부
			횡 계 9 리	중전 횡계1리 일부
			횡 계10 리	중전 횡계1리 일부
			횡 계11 리	중전 횡계4리 일부
			횡 계12 리	중전 횡계4리 일부
			횡 계13 리	중전 횡계5리 일부
	차 향 리	2	차 향 1 리	중전 차향1리 일부
			차 향 2 리	중전 차향2리 일부
	수 하 리	1		중전 수하리 일원
	용 산 리	2	용 산 1 리	중전 용산1리 일원
			용 산 2 리	중전 용산2리 일원
	유 천 리	3	유 천 1 리	중전 유천1리 일부
			유 천 2 리	중전 유천2리 일부
			유 천 3 리	중전 유천3리 일부
	병 내 리	1		중전 병내리 일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6,560,000원/년 (비용추계서 생략 :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이장수당 5,760,000원 (240,000원/월×2명×12월)
- 명절휴가비 800,000원 (200,000원/회×2명×2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추가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6,56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연락처	(033) 330 - 229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6,560,000원/년 (비용추계서 생략 :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이장수당 5,760,000원 (240,000원/월×2명×12월)
- 명절휴가비 800,000원 (200,000원/회×2명×2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추가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6,56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연락처	(033) 330 - 2291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